

국 민 안 전 처

주 의 요 구

제 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삼척시, 고성군, 횡성군, 양양군, 인제군

내 용

「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0조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(113)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

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.

1.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: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
2.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날부터 3개월
3.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: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

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, 1회 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같은 법 제12조에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

113)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
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

그러나,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“○○제0공원 어린이공원” 등 7개 어린이 놀이 시설의 경우 [표]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가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를 기간을 도과하여 이수·실시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다.

[표]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위반 세부 현황

시군	시설명	관리 위반내용		
		교육(검사) 유효기간	교육(검사) 이행일자	내용
계	7개소			
인제군	○○제0공원 어린이공원	2016.8.25.	2016.10.13.	안전교육 지연 이수
인제군	○○제0공원 어린이공원	2016.8.25.	2016.10.13.	
양양군	○○어린이집 놀이시설	2016.8.22.	2016.10.27.	
삼척시	○○주공아파트 놀이터1	2016.8.27	2016.9.1.	안전검사 지연 실시
삼척시	○○주공아파트 놀이터2	2016.8.27.	2016.9.1.	
횡성군	○○아파트 놀이터	2016.6.24.	2016.9.19.	
고성군	○○아파트 놀이터	2016.7.23.	2016.9.27.	

* 자료 : 강원도청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삼척시장, 고성군수, 횡성군수, 양양군수, 인제군은

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기간을 도과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,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